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8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박성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동욱, 김영옥, 김용일,
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형재, 남창진,
문성호, 박영한, 박칠성,
박환희, 서호연, 송경택,
심미경, 유정인, 윤기섭,
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
임만균, 최민규, 최윤희,
최재란, 홍국표, 황유정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,
- 합의제 위원회(행정기관)와 달리심의·자문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그 회의록 작성 및 보존의 의무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,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장이 아닌 시장으로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위원회는 회의록 또는”을 “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 및”으로 함(안 제10조제1항)
- 나. “위원회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함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회는 회의록 또는”을 “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회의록 등의 비치) ① <u>위원회</u> 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	제10조(회의록 등의 비치) ① <u>시장은</u> 위원회의 회의록 및 ----- -----.
② <u>위원회</u> 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<u>할 수 있다</u> .	② <u>시장은</u> ----- ----- 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